



Copyright Guide Book for Educational Information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수업, 저작권과 소통하다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저작권의 맥을 잡아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쉽게 익히는 이야기 ‘쏙’ 학교 저작권

이 책을 만드신 분들

기획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
황은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집필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신명우 서울남정초등학교 교사

윤문

유연주 작가

편집디자인 · 인쇄

신성인쇄상사

본 교재는 에듀넷(www.edunet4u.net)을 통하여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Guide Book for Educational Information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수업, 저작권과 소통하다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저작권의 맥을 잡아라

발간사

저작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스마트 폰 등 발빠른 각종 21세기 형 미디어가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며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례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방법은 다양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고품질의 콘텐츠는 핵심 역량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급증하고 누구든지 불법복제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식기반사회의 출발점이며 문화산업을 일구는 토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과거 문화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문화산업 등 21세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분쟁은 여전히 증가하고, 초·중등 학생은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권 침해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발간사

특히, 어려운 법률용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들어 시야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와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저작권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사와 교육관계자 여러분이 저작권을 단시간에 숙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현장의 일선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신 채명기 원장님과 신명우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저작권의 내용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해 애쓰신 작가님과 검토진,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은 물론 학생 모두, 저작권을 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천 세영

천 세영

Contents



ep 01.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굳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나요?	12
ep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20
ep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30
ep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42
ep 05.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50

2장



ep 06. 초등학교 1학년생의 작품도 저작물인가요?	60
ep 07. 학생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까?	66
ep 08.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저작물 맞죠?	74
ep 09. 복사한 영어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요?	82
ep 10.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90
ep 11. 수업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98
ep 12. 불법다운로드 자료로 수업해도 되나요?	106
ep 13. 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요?	114
ep 14.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무슨 초상권이요?	122
ep 15.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아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130

교수,
저작권
침해지다

3장

- ep 16. 제가 작성한 학교 시험문제가 왜 업무상 저작물이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 인가요? 140
- ep 17. 원치 않는 공개수업, 녹화에서까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148
- ep 18. 끝끝내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154
- ep 19. 저작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162
- ep 20. 공문에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170
- ep 21. 영화관에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업시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178

저작권
법률집이란

4장

- 하나. 나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184
- 두울. 헷갈리는 저작권교육, 왜 필요할까? 187
- 세엣. 저작권을 교육하는 당신의 진짜 목적은? 190
- 네엣.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교육의 알짜배기 콘텐츠 192
- 참고문헌 196

Copyright
Guide Book
for Educational
Information

Copyright
Guide Book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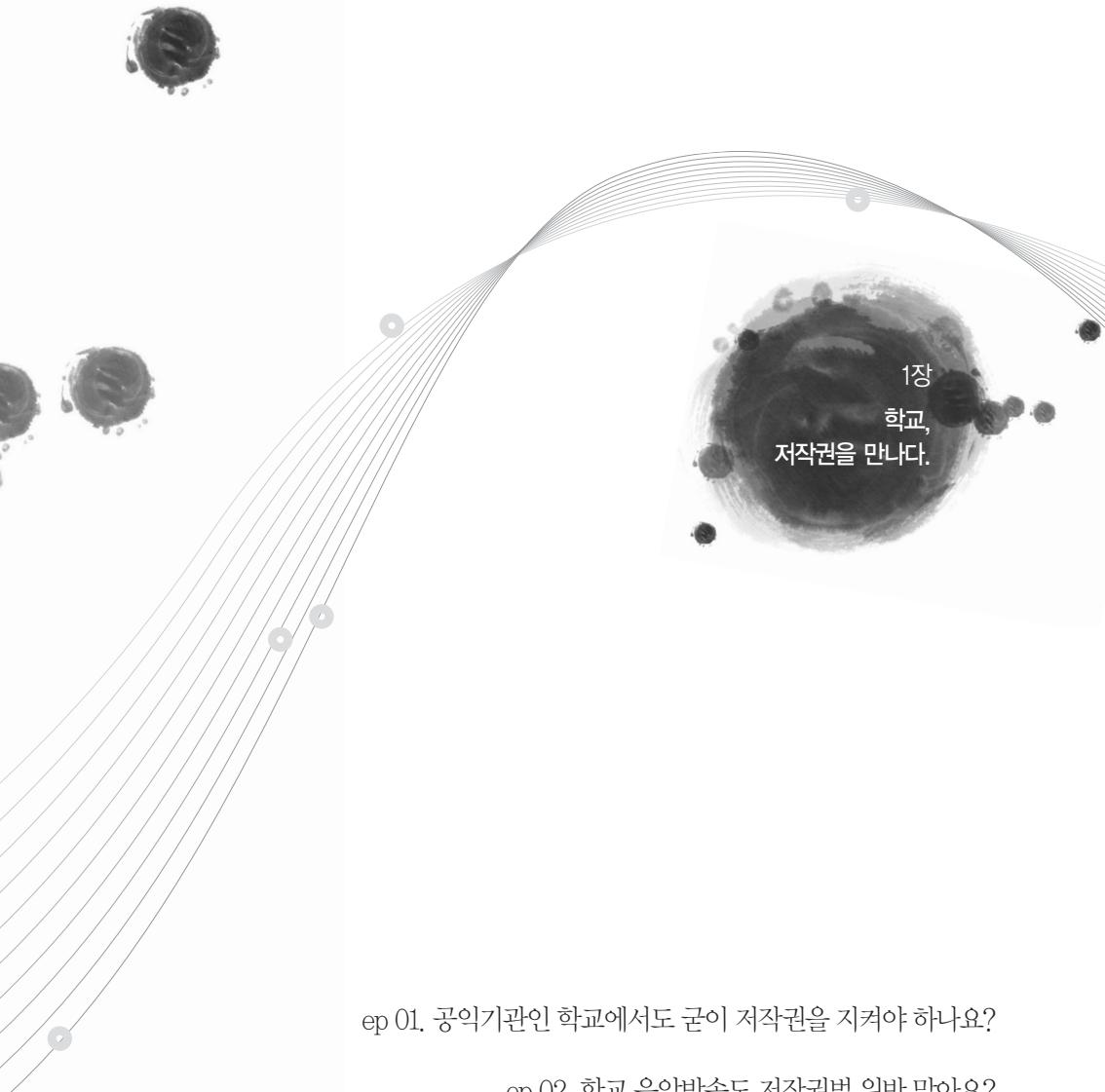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학교, 저작권을
만나다



ep 01.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굳이 저작권을 지켜야 하나요?

ep 02.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ep 03. 학교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ep 04.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ep 05.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굳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저작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저작권에 대해 접할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가 간 협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음알음 주워듣기는 해도 워낙 경우가 다양한데다가 까다로운 법조문을 해석한 것이다 보니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고, 기억에 잘 남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반갑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비영리 기관이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까지도 저작권을 굳이 지켜야 할까요? 제 생각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인류가 축적한 저작물을 활용한 학습이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다 보니 그러한 저작물을 일일이 허락을 받아가면서 이용하는 건 대단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악, 그림, 사진 등은 학교행사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활용되는 저작물인데요, 사전에 전부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면 글쎄요, 교사로서 생각할 때 그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교사가 그 많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공익을 위한 기관이며, 교육기관입니다. 저작권을 지키기도 어렵고 굳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 답변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공중(公衆)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수업과 교내 행사에 이용되는 저작물을 사전에 모두 허락 받는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저희 또 한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학교에서 저작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이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짚고, 이해한 후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작권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입니다. 만일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힘들여 창작하려고 할까요?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입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해 낸 덕분에 우리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작권법이 단순히 저작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기도 한 셈이죠.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실을 수도 있고 수업목적을 위하여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서도 저작권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하는 것이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라고 해서 모든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학교에서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의 범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관련사례

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데 무슨 뜻이죠?



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학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수업시간에 시(詩)를 가르친다고 할 때, 시의 일부 혹은 짧은 시의 경우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편소설을 지도하기 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소설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불어 ‘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교육목적상 저작권을 제한했지만, 이 ‘교육목적’ 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어 저작권자 및 권리단체의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교육목적에

서 ‘수업’ 목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해서 이전보다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업목적’이란 직접적인 교수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환경구성, 학교행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는지요?

관련사례



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요?

**아니오,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흔히 ‘교과서에 웬 저작권? 교과서는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뜻밖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도 엄연히 하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나 많은 사람이 교과서에 실린 것들이 저작물이 아니고 당연히 저작권이 없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과서가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목적상 집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교과서의 집필 진으로서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관련사례

Example

1-2

경우, 선생님이 애써 작업한 콘텐츠에 대해서 만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새로운 내용을 생산해 내거나 창작하려는 열의를 보일 수 있을까요?

더불어 교과서에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는데, 이건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교육목적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교과서의 자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참조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권법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2조,

제25조 _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5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5조

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25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

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

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확인하기 1 |

1. 다음 중 저작권법의 의의가 아닌 것은?

- ① 저작권자의 보호
- ② 저작권자의 이익 극대화
- ③ 문화산업의 발전
- ④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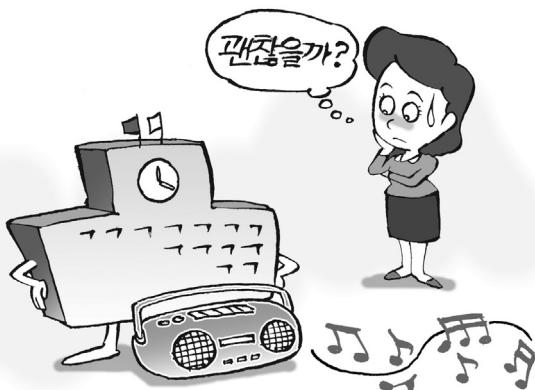
2. 다음 중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교과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④ 입법과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정답 1. ② 2. ③



학교 음악방송도 저작권법 위반 맞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대신하여 질문 드립니다. 간단히 여쭈어 학교 음악방송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학교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건전가요나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곤 합니다. 동요 등의 음악방송을 하는 초등학교가 많다고 들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침과 점심, 하루에 두 차례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데요,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저작권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사로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혹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요? 괜한 우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떤 선생님의 전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학교 음악방송이 저작권 문제에 걸리니까 그동안 해왔던 하루 두 차례의 방송을 모두 그만두자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말씀처럼 이 경우, 제 생각에도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음반제작사나 음악가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짐짓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몇몇 선생님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통에 교사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어느 편이 옳은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저작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때, 학교 방송 시간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같은데요. 만약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음악방송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학교에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음악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공연에 대하여 반대 급부를 받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음악 방송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음악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음악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즉 특정회사나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제작되어 유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1항과 유사해서 혼동할 수도 있지만, 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지 못하는 몇몇 시설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장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급해야만 음반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데요, 에어로빅을 강습받을 때 만일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흔히 비유로 이야기하듯 양꼬 없는 찐 뺑이 아닐까요? 따라서 이러한 장소와 시설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음반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조)

관련사례

연예인의 행사에서 저작권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연예인에게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행사에 연예인을 부를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지겠지요?

학교행사에서 연예인을 부를 때,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에게 출연료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청중에게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연예인에겐 출연료를 주고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물론 연예인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에게까지 값을 치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에게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관련 음악의 저작권자에게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만약 연예인이 무료로 공연한다면 저작권은 문제 가 안 됩니다.

관련사례



학교 음악방송에서 최신가요를 틀어도 될까요?

판매용 CD 등을 구입해서 틀어주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음악방송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방송을 통해 ‘최신가요’를 틀어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관련사례

Example

2-2

학교 음악방송에서 최신가요를 틀어 주어도 됩니다. 물론 최신가요의 음원인 CD나 테이프 등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매한, ‘판매용’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용 음반을 틀더라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경기에서도 많은 음악저작물이 이용되는 것 아시죠? 야구장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기에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한국 야구 위원회)는 저작권료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와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면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29
저작권법 제29조,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_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1
---------------------------	----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 목에 따른 유통주점에서 하는 공연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참조조문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저작권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시행령	
제11조 _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확인하기 2 |

확인하기

1.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방송을 할 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곳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음악방송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 ① 교실
 - ② 학교
 - ③ 야구장
 - ④ 백화점

2. 학교행사에 연예인을 초청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할 때, 이는 왜 저작권법 위반인지 설명해 보시오.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 누가 책임져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맡은 정보부장으로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엔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온 캐릭터 사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저작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어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0년 8월 12일, 우리 학교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누구나 알만한

유명 캐릭터인 ○○를 학교 게시판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2010년 10월 11일, 이 사실을 알고 게시판에서 캐릭터와 함께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지요.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캐릭터와 함께 문제의 글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 차원에서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저작권 관련 안내도 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보부장으로서 학교 홈페이지 담당인 제가 해당 저작권자에게 전화로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작권자는 학교의 서면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면 사과와 손해배상을 한 후에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저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담당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해당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저로서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침해행위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다면
책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신경을 써도 틈새가 있기 마련인 불법 저작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저작물 관리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고민은 학교홈페이지 관리자나 정보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문제거든요. 학교 구성원의 방문자 수와 이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언어폭력, 비방 등의 문제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특히 저작권 문제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서 학교마다 상담의뢰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답변이 선생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길 희망해 봅니다.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저작물의 경우,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캐릭터 저작권자에게서 요청을 받은 직후 해당 저작물과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후 저작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1항 3호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거나 저작권자의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 침해 사실을 안 즉시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고, 또 침해 중단 등의 요구를 받을 자(성명 및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주소)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침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선생님의 대응은 대체로 적절하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그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담당자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면 선생님과 학교 모두 저작권 관련 책임을 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자의 재산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받고 선생님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선생님이나 학교가 그 피해액에 대해서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 캐릭터의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은 하셨나요? 만약 그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그러한 요구를 해왔다면 이것은 위법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에는 저작권이 없는데도 허위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학교에 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사기행각이 드러나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를 부탁합니다.

관련사례

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인가요?



네, 학교도 OSP로서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을 자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의 홈페이지지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동일’ 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OSP(Online Service Provider),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자료실, 게시판, 방명록 등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게시판을 공개하고 저작물을 올리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홈페이지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사례



학교가 저작권을 침해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해도 되나요?

아니오, 학교가
학생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교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그때마다 다

관련사례

Example

3-2

른 학생들을 위해서 침해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닌지 선생님으로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계정의 정지는 사실 침해한 학생을 지도하고 선량한 학생의 보호와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겠지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문제 학생의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용자 계정정지에 관한 명령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 2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자체에서 학생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은 자칫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홈페이지에 학생이 글을 쓸 수 있는 권한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올리지 말도록 적절한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참조조문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2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30)
1. 내용의 수정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실한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들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 102

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 바.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2.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103

저작권법
제103조_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 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 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행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33

참조조문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3조의

2_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 [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참조조문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33

저작권법

제133조의

2 _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 확인하기 3 |

1. 다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가 아닌 것은?

- ① 다음(DAUM)
- ② 네이버(NAVER)
- ③ 학교홈페이지
- ④ 폐쇄형 홈페이지

2. 학교에 불법저작물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신속히 해야 할 조치는?

- ① 저작권법 위반 자료의 삭제
- ② 저작권법 위반 사실의 통보
- ③ 해당 저작물을 올린 학생의 계정정지
- ④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 확인

정답 1. ④ 2. ①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학교에 학생작품을 게시하려고 할 때 허락받을 필요가 있는지, 만일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우수 산문이나 그림 등을 학교에 게시하는 데 학생 동의나 학부모 허락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의 작품을 교내에 전시한다는 점에서 학생도 만족한 모습이었지요. 또, 게시되는 작품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작품이어서 작품의 주인인 우수자에게는 상장이나 상품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작권 관련 홍보자료를 보고서야 학생도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학생의 작품도 엄연히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따라서 산문이나 그림 등 학생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게시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에게 저작물에 상응하는 상장이나 상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일 학생의 작품을 현관이나 복도 등에 게시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저작권자인 학생의 동의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미성년자이니까 학부모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까? 또한, 허락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원작품을 학교가 소유하거나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한 때는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뢰하신 상담 내용은 법과 현실 사이에 차이를 드러내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학생작품을 이야기하는 데 뜬금없이 법과 현실이라니,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학생의 글이 학교대표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대표로 선정되면서 얻게 될 상장, 그리고 명예와 자부심 등을 기대하게 되겠지요? 그 학생의 글이 학교신문에 실린다고 해도 싫어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설사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작품을 학교가 소유하는 경우로 학교는 원작의 소유자로서 작품을 복도나 현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공모전의 광고나 홍보문에 ‘우수작품은 나중에 출판물로 발행하거나 복도나 현관에 자유롭게 게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우수작품을 출판하거나 복도, 현관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원작의 소유자도 아니고, 공모전의 광고문 등에 우수 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수작품을 출판하거나 복도 등에 게시하려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공모전이 매년 이뤄지는 정기적인 행사이고, 우수작품을 복도 등에 게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사례에서라면 학교나 선생님은 최소한 그러한 정도의 이용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수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복도나 현관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속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시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학생보다는 학부모에게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고,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작품의 이용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모전을 치르기 전에 “학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OOO 공모전을 치를 예정이고,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될 예정이오니 반대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그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달라”는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는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예대회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회 광고의 사전 안내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학예대회의 저작재산권은 사전에 어떻게 안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학예대회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우수작의 저작재산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내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의 산문대회에서 “산문 대회의 결과 우수작의 저작재산권은 교육청에 귀속된다.”라고 안내를 했다면 산문대회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은 교육청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완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권리 중 어떤 권리가 양도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일체’가 교육청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저작권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산문 대회의 결과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는 교육청에 귀속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수작품의 저작재산권을 무조건 양도받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자에게서 해당 작품의 모든 재산을 뺏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수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계약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주최자나 창작자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관련사례

Example

4-2

보호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겠지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됩니다. 즉 학교에서 계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후 70년이 됩니다. 기준보다 20년 늘어나게 됩니다.

참조조문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39

저작권법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제39조,

제45조 _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45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참조조문

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 _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확인하기 4 |

1. 학교 주관 산문대회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광고는?

- ① 우수작품의 저작권은 학교로 귀속됩니다.
- ② 우수작품의 저작재산권은 학교로 귀속됩니다.
- ③ 우수작품의 저작인격권은 학교로 귀속됩니다.
- ④ 우수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학교로 귀속됩니다.

2.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은?

- ① 저작자 생존기간 + 30년
- ② 저작자 생존기간 + 40년
- ③ 저작자 생존기간 + 50년
- ④ 저작자 생존기간 + 70년

정답 1. ④ 2. ③



일간지에 소개한 학교기사를 제 홈페이지에 실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저작권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환경 글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급과 학년에서도 글쓰기 대회를 치른 후 우수작품을 교육청에 제출했어요. 그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다시 교육청 대표로 뽑혀서 서울시 대회에 출

전했지요. 뜻밖에도 그 작품은 대상을 받았고, 기자는 그 학생을 인터뷰한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고 교사로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 기분을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별생각 없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학생이 수상한 글과 함께 신문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인가요?

얼마 뒤 신문사에서 이런 제 행동이 저작권 위반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였지요. 안 그래도 기가 막힌 데 한술 더 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신문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에 불과해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아는 건가요? 설사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해도 신문사에서 이런 일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단순 사실 전달의 보도라면 무방합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억울해하는 상황이시군요.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의 학생 작품이 서울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되자 선생님께서 학생의 글과 함께 관련 신문기사를 선생님 홈페이지에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선생님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신문기사가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신문기사에 논평, 해설 등 기자의 창작성과 노력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자선공연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기사는 사실의 전달일 뿐 창작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만약 이러한 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까지도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새로운 신문기사나 글을 쓰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소한 기사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제 서울역에서는 추운 겨울 고통 받고 소외당하는 노숙자를 위하여 조그만 자선공연이 펼쳐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정을 느끼게 하였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선생님의 상담 사연을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생님께서 올린 기사가 단순히 학생의 수상 사실을 전달한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선생님이 이용한 신문 기사의 내용에 기자의 창작성이 녹아있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신문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관련사례

학교뉴스를 제작할 때 신문기사 내용을 이용해도 되나요?



네, 신문기사가 저작물을 보조하는 수준으로서,
출처를 밝히고 원본 그대로를 싣는다면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뉴스를 제작할 때 신문기사 내용을 이용해도 되나요?”라고 하신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이 질문에서 우선 학교뉴스를 어떠한 매체의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를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하려는 형태가 신문인지요, 아니면 방송인가요? 둘째로 신문기사의 이용 범위가 부분인지 또는 전부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셋째, 제작의 목적이 수업인지 수업 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론에 근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할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다른 신문기사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즉, 활용되는 내용이 제작하시려는 저작물을 보조(從)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되는 신문기사의 출

처를 밝히고, 왜곡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이러한 범위와 방법으로 신문기사를 이용한다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교신문에 실을 학생작품, 수정해도 될까요?

아니오, 인용은 가능하지만
변형 등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5-1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학생의 작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학교신문에 올릴 수는 있지만, 수정해서 올리실 수는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인용할 때 원 저작물을 번역하는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변형해서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학교신문에 올릴 학생작품을 수정하기 원하시면 선생님이 아닌, 원저작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하도록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조조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

저작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1.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제28조 _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5조의3 3.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5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 확인하기 5 |

1. 다음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은?

공표된 저작물을 ()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① 보도
- ② 교육
- ③ 광고
- ④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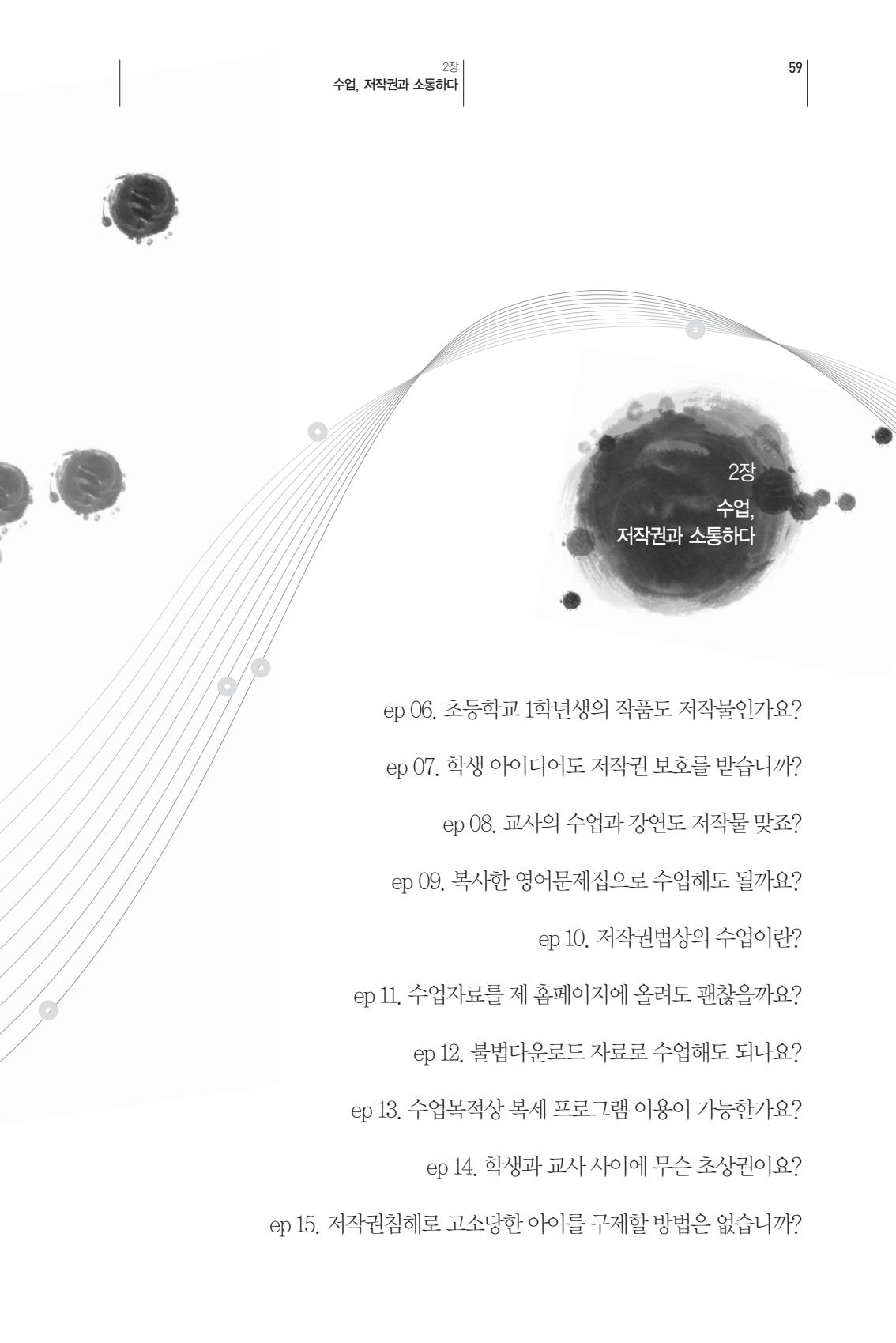
2. 다음 중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은?

- ① 헌법
- ② 소설
- ③ 법률
- ④ 훈령

정답 1. ③ 2. ②



수업 저작권과
소통하다



2장
수업,
저작권과 소통하다

ep 06. 초등학교 1학년생의 작품도 저작물인가요?

ep 07. 학생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까?

ep 08.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저작물 맞죠?

ep 09. 복사한 영어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요?

ep 10.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ep 11. 수업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ep 12. 불법다운로드 자료로 수업해도 되나요?

ep 13. 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요?

ep 14.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무슨 초상권이요?

ep 15.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한 아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의 작품도 저작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 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작품을 모아 학년문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긴 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자녀의 글을 문집에 실었다면서 앞으로는 아이의 저작물을 꼭 보호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작품 중에는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었고요. 하지만, 솔직히 1학년 학생의 작품이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작품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1학년생도
저작자로서 작품은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물로서의 충족요건을 갖추었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작품도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학생의 작품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린 학생도 ‘저작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저작물이고, 어떤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자어로 ‘지어서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저작물(著作物)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로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한정 지었습니다¹⁾.

1) 저작권법 제7233호(2005년 시행)까지의 정의

답변

Answer

하지만,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로 저작물을 한정 지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저작물로 포함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정의를 확대하게 되었고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권 법의 정의를 보면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숭이와 침팬지를 훈련해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고 해서 이 그림이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단체 등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런데 표현하지도 않은 생각과 아이디어까지 모두 보호한다면 문학과 예술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권리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에 걸쳐 유명작가 그림을 모사했다고 해서 그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 될 순 없습니다. 모사한 그림이 스캐너로 스캔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따라서 저작물의 판단기준 중에서 창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저작물이 윤리적이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의 작품에 ‘창작성’이 있다면 그것은 저작물로

Answer

답변

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당 초등학생도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글쓰기 대회 개최 당시 우수 작품을 모아 학년 문집을 만들 것을 예고했다면 학생 또는 학부모의 허락 없이 우수 작품을 모아 학년 문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저작물에 “Copyright”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오, 표시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저작물에서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 등의 표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방법의 하나로서 사람들이 저작권의 소유자를 표시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과연 이러한 표기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Example

6-1

따라서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저작권 표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려주고요, 둘째, 저작권자가 누구이고 언제 공표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본인이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없게 하여 주는 장치가 됩니다.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이고, 이용자에게는 저작권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연을 담은 풍경화가 저작물인가요?



네, 풍경화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퀴즈를 내 보겠습니다. 복사기를 이용해서 흑백사진을 복사한 경우, 복사된 사진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복사한 사진은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든,

관련사례

Example
6-1

또 전문가인 화가라고 해서 자연을 화폭에 담을 때 기계처럼 똑같이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구도도 생각하게 되고, 색채와 형태도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게 되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림에는 자연히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을 담은 풍경화는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2조(정의)

2

저작권법
제2조 _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확인하기 6 |

1. 저작물의 정의를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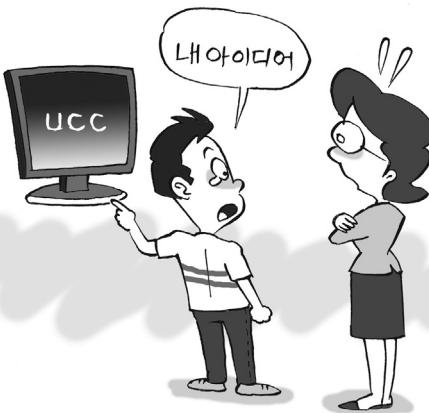
2. 다음 중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 ① 침팬지가 그린 그림
- ②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 ③ 전문화가가 그린 풍경화
- ④ 지렁이를 사용해서 그린 그림

정답 1. 저작권법 제2조 참조 2. ①



학생 아이디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만든 우리 고장 UCC”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한 아이들 모두 본 대회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응했고,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작권과 관련해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대회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

우수상을 받은 UCC 있잖아요, 사실 그건 원래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친구가 제가 들려준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제 대신상을 받은 거라고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먼저 만들고 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 너무 속상해요. 저도 상을 받을 자격 있지 않나요? 저한테도 상 주세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이 학생의 말을 듣고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딱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달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답을 주겠다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 학생의 이야기만을 듣고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의 UCC 수상을 취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친구도 공동 제작자로 인정해서상을 수여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요. 아래처럼 답답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오, 아이디어나
이로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학생과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UCC를 만든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군요. 마음이 아주 어려우시지요?

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것인 양 UCC를 만든 것은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과 현실의 차이지요. 따라서 굳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친구에게 추가로 상을 주거나 이미 수여된 상을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작권법 취지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합당한 권리를 부여해서 창작에 따른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합당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하기 위해 설정된 권리입니다.

리입니다. 이것이 저작권이 생겨난 취지이거든요. 더불어 저작권자 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들만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보호와 함께, 나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우리의 문화’를 보호하고 향상 발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창작에 쏟은 노력과 열정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창작자에게 자신이 쏟은 노력과 열정에 따르는 물질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로 보답하는 행위는 결국 문화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몇 차례 말씀 드린 것처럼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책, 예를 들어 여행 관련 책을 보고 난 뒤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책을 썼다고 생각해 보죠. 이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말이나 문장 등 은 저작권에서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론이나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의 문제는 남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 일 저작물의 아이디어까지 보호한다면 새로운 표현가능성을 가로막 아서 문화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론과 함께 아이디어 역시 저작권 법 상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설의 스토리,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줄거리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소프트웨어 설명서도 저작물 아닌가요?



실용적 목적의 기능적 저작물은
창조적 개성을 담았다면 저작물이지만,
단순 설명이라면 저작물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설명서와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2007 설명서』를 쓴 저자가 다른 한글 2007 교재에서 자신의 표현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한글 2007 설명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이용한 다른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기능적 저작물은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²⁾ 소프트웨어 설명서 등의 기능적 저작물은 특정 기능과 과정을 설명

²⁾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방법의 폭이 일반저작물에 비해 좁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한글프로그램의 특정기능을 설명하는 경우, 표현 내용과 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 2007 교재에서『한글 2007 설명서』의 창조적 개성이 담긴 표현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 기능설명이나 조작설명의 표현을 이용했다면 저작권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사례



기록물이 아니면
저작권 보호를
못 받나요?

아니오,

보호받을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다면
권리자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 누군가 즉흥시를 읊었습니다. 그 즉흥시는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저작물로서 당

관련사례

Example

7-2

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정을 표현한 것은 염연한 창작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성의 여부가 저작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감상을 담아 표현한 즉흥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저작권을 아무리 보호해 주고 싶어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부딪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작품이 내 즉흥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읊은 시인데 당신이 왜 내가 한 표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느냐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흥시는 기록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기록물의 형태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참조조문

제1조 (목적)

저작권법
제1조,
제2조 _

1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확인하기 7 |

1.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 ① 소설
- ② 회화
- ③ 무언극
- ④ 아이디어

2.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 말해 보시오.

3. 저작권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저작물 맞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입니다.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니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빈번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교사로서 제가 하는 수업,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기별로 두 차례씩, 1년에 네 차례 학부모와 다른 선생

님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을 공개합니다. 교사의 공개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공개 수업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제 허락도 없이 수업 장면을 녹화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학부모라 해도 애써 준비한 수업 노하우를 영상에까지 담는 데에는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학부모님께 사진을 찍거나 가급적 자녀를 중심으로 녹화해 주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께서는 애초에 수업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촬영하면 왜 안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업을 공개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것인 만큼 학부모님이 자유롭게 수업에 참관하시고 자녀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수업까지 허락 없이 촬영해 가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수업에 대한 권리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제 생각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네, 수업이나 강연도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의 수업도 하
나의 저작물, 특히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어문저
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상담사례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을 뜻합니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수업 역시 훌륭한 저작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저작물로서 보호받더라도 과연 선생님께 수업 내용의
녹화를 금지할 권한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자로서의 권리부터 알아보죠.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내용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해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수업이 업무상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학교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의 저작자는 대체로 선생님 본인이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작자로서 수업의 촬영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행하는 대부분 학교 수업이 이처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특히, 공개 수업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 초상권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초상권자로서 사진 촬영을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비록 공개 수업이기는 하지만 그 공개 수업이 선생님의 초상권 행사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질문에서도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영상 촬영이 아닌 사진을 찍거나 혹여 촬영하더라도 자녀 중심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면, 선생님은 공개 수업 자체의 녹화를 금지하기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사진 촬영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수업은 업무의 하나이고 대체로 학교가 수업의 저작권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 수업의 녹화 금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초상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사전에 수업의 녹화와 사진 촬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학부모는 혹여 촬영을 하더라도 자녀 중심으로 녹화하는 것이 선진 시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사례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 거죠?



공익 목적을 위해 보호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저작권자가 권리의 포기한 경우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저작물이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저작물이긴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공익을 위해 보호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끝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을 위해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등의 법률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공익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단체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제한하는 이유는 만일 그들의 저작권이 공익에 우선하

게 되면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저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거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해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관련사례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는 저작권법 제3조의 1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물로서 가져야 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해야 하는가?’ 인데요, 상식적으로 알듯이 우리가 즐겨 보고 듣는 외국의 영화나 음악 등은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보호하는 것일까요?

관련사례

Example

8-2

저작권법 제3조의 1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 예를 들어서 베른협약에 가입된 나라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WTO 협정 등에 가입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조약들에 가입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나라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북한저작물도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북한 지역에까지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북한의 저작물은 내국인의 저작물로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참조조문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3

저작권법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제3조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 참조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3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
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
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3조, 제4조 _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
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4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확인하기 8 |

※ 다음을 읽고, ○×를 하시오.

1. 북한저작물은 남한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
2.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

정답 1. ○ 2. ×

상담 9

Question

복사한 영어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사로서 낮 부끄럽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행처럼 아무렇지 않게 해 오던 일이라서 죄책감도 별로 없었고 사실 학생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그다지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해도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어찌하면 좋을지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 끝에 저작권 상담교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일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초임교사 때부터 영어수업 보조자료로서 문제집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사오라고 해도 잘 사오지도 않고, 한편으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시작하게 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학생이 저더러 “선생님은 저희보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왜 선생님은 문제집을 복사해서 주세요?” 하며 따지듯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저의 노력을 몰라주어서 섭섭한 마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저작권보호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내가, 과연 도리어 저작권을 침해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교사로서 수업을 위해 복사물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문제집의 일부만 복사하여 배포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을 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위 법 조문을 인용하여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상황에 맞춰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

제·배포·공연·방송·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등과 같이 저작물의 성격상 일부분만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전부를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영어수업이라는 활동에서 보조 자료로서 영어문제집을 복제, 배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업내용을 보충 설명하거나 이해를 돋기 위한 행위로서 영어문제집에서 문제 일부만 복사해서 배포하면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합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문제집을 ‘전부’나 ‘필요 이상’으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영어문제집의 일부분만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눅이 들어서 짜임새 있는 수업 준비를 중단하지는 마시고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가면서 학생들을 위해 계속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영어수업에 대한 열정, 앞으로도 계속 부탁합니다

관련사례

학생이 발표자료 만들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학생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때
이용한다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제한되기는 합니다. 다만, 수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표자료를 만들 때, 발표 목적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목적 복제시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아니오, 수업목적상 복제라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4항을 보면,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외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어 대학 이상의 학교, 교육연수원 공무원 교육원 등에서는 저작물을 수업목적으로 복제한다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은 저작권자 개인이 아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5

저작권법

① 생략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확인하기 9 |

수업인가

1. 다음 중 수업목적상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 ② 공표된 저작물의 배포
- ③ 공표된 저작물의 전송
- ④ 공표된 저작물의 공중송신

2. 다음 중 수업목적상 저작물을 복제할 때, 보상금을 내야하는 곳은?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

정답 1. ④ 2. ④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작권 강사를 초빙해서 저작권법에 대해 연수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당 강사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저작권이 수업목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업목

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조문에 매번 나오는 수업이라는 말이 참 모호합니 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이번 기회를 통 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 랍입니다. 학교 이외의 야외활동은 수업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또,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지불식간에 저작권을 침해할 소 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솔직히 법 규정에서 ‘수업을 수업시간만으로’ 한정 짓는다면 교사가 수업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업시간이라는 말이 너무 협소하 지 않을까요? 이 기회에 저작권법이 말하는 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알 려주셨으면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수업은 교실, 야외 등에서
교사(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와
학생의 대면수업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수업’의 의미가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수업이고 어떤 것이 수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장소 기준의 문제が 대두하였었지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수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교실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수업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가 아닌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한 수업도 수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수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수업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명확한 해석이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0

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법 제25조 2항의 수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은 대면수업(Face-to-face instruction)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교실은 물론이고 야외 수업도 대면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학생과의 대면도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공유하거나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 역시 수업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단,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를 공유할 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끼리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전, 사후 학습도 수업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학습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학습자료를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감독 아래에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자에 의해 진행된다면 수업의 범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와 같이 수업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차후 개정될 저작권법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저작권법에서 다른 수업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사례

제25조 2항에서 말하는 학교와 교육기관의 범위는?



특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서는 학교와 교육기관의 범위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 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④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각종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④재명기(2010)『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 2010 저작권 연수교재』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p. 116

구분	근거법률	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등기술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 특수학교 또는 대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기관
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유치원 (국립 · 공립 · 사립)
	초 · 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고등교육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국가 ·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		각종 공무원 교육원, 정부부처 공무원 연수원, 지방 공무원 연수원, 각 시도 교육 연수원 등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소속 교육지원기관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제외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5조 2항

25

저작권법

수업의 의미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

제25조

1) 대면수업의 의미: 저작권법 상 수업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이라 함은 교실 등 장소적 제한이 있는 대면이 아닌 교사와 교시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학생들 간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2항_

2) 교사들의 수업준비를 위한 각종 자료의 개발 및 공유 문제: 교사가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각종 수업자료의 개발, 작성)도 수업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을 위해 관련 교사 간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도 수업의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는 과목 교사 간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공유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교사와 학생 간 수업 전후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다양한 수업가능 여부: 수업과 관련 있는 –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사후 학습 등 – 학습자료의 복제, 배포, 전송은 수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과 관련 없는 일반학생들에게까지 자료를 배포, 전송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의 수업 포함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는 학교장의 감독하에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면 수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앞으로 법률 개정 시 '수업의 정의 등' 반영 여부: 문화부는 수업 및 수업지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차기 법률 개정 시에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확인하기 10 |

수업 인식기

※ 다음을 읽고, ○×를 하시오.

1. 학원은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
2. 학교장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도 수업의 하나이다. ()
3. 수업준비 활동도 수업의 일환이다. ()



수업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 교사입니다.

과목이 과목이다 보니 수업시간에 다른 나라의 사진, 음악, 동영상 자료 등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실린 글 등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침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담당 교과목인 사회과 관련 필요한 수업 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겠다 싶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니 저작권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업자료를 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혹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수업시간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를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지 인데요, 몇몇 선생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편찬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교사로서 최대한 학생을 배려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미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업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그들 스스로 공부할 때 요긴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지요.

한 가지 더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만일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는 또 어떤가요? 남의 자료를 학습자료로 활용하도록 올려도 될까요?



네], 수업받는 학생들만
수업목적상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를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관심 두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여 원격연수나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수업목적상 허락되는 행위를 복제·공연·방송에서 전송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교실수업이 아닌 인터넷에서도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곧 선생님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업자료를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수업자료를 수업받는 학생들 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10항

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조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접근제한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업받는 학생들만이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회원인증을 하거나 학생들만이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복제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업받는 학생들만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사실 접근제한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수업받는 학생들만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자동적인 조치가 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내려받은 자료를 다른 곳에 옮겨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내려받은 자료의 추가 복제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업자료는 첨부파일보다는 본문에 첨부하는 쪽이 바람직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키보드의 복사단축키 사용을 제한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웹 보안프로그램이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수업목적으로 내려받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복제방지 조치가 힘을 앓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구와 함께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업목적상 전송행위는 허용되지만, 이 때문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생이 홈페이지 수업자료를 다른 데 올리면 누구 책임이죠?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업목적상 필요한 자료를 복제 공연,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선생님께서 올린 수업자료를 학생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선생님의 행위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께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복제방지조치를 취했는가, 아니면 취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저작권법 제25조 10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분한 복제방지조치를 취했다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한 학생에게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생님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겠지요. 책임의 한도는 회일적이지 않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생님께 저작권법상의 책임이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사례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 뭐라고 써요?

정해진 특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예시문을 참조해 작성하세요.

많은 선생님께서 학생과의 수업이나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려고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자료를 올리는 것은 물론 합당하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인터넷에 올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러한 자료가 불법적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복제방지조치 등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그중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저작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야 하는데요, 이 경고문구는 사실 정해진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시를 참조⁴⁾하셔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문구를 수정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4)채명기(2010)『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 2010 저작권 연수교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p. 116

관련사례

Example

11-2

예시 1)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회원은 저작권법상의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게시할 수 없으며, 만일 저작권 등의 침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시 2)

본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O학년 O반 학생들의 수업을 돋기 위한 것으로, O학년 O반 학생들만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목적으로 내려받은 자료는 다른 곳에 옮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료는 이 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5

저작권법

①~⑨ 생략

제25조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9

시행령

법 제25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9조 _

참조조문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9
-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_
-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 제한조치
 -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 확인하기 11 |

1. 다음 중 수업 목적상 전송을 할 때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 접근제한조치
- ② 이용금지조치
- ③ 복제방지조치
- ④ 경고문구의 표시

2. 저작권법 제9조 나목의 복제방지조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접근제한조치
- ② DRM 프로그램의 사용
- ③ 웹 보안 프로그램의 사용
- ④ HTML을 통한 복제방지

정답 1. ② 2. ①



불법다운로드 자료로 수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것까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학습관련 동영상이 있는데요, 값이 매우 비싸더군요. 그래서 학교에 구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동영상을 복제해서 이용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학교의 권고대로 얼마 전 인터넷에서 불법다운로드

해서 이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교사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을 엎 반 선생님에게 털어놓았더니,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수업목적을 위해 서라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어도 될까요?



네,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의 상담의뢰에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업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면 되지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유한 저작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필요한 동영상을 복제한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제시해 주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교사나 학생이 교실 또는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대면하여서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과정 중에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영화나 기타 시청각 저작물은 개별 영상의 실연 또는 전시가 본 편 법 전상 불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에 의하여 제공되고, 그 실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서 아무리 수업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 영상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업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수업에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사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적과 필요성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두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침해한 자에게 민사 책임을 묻거나,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형 또는(및)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민사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가 진행 중이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침해의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책임이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

소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벌금 등을 부과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할 수 있고, 정신적 창조물로서의 권리인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만 받아도 저작권 침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운만 받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2P를 통해 다운받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을 받을 때는 내려받은 저작물이 회원들 사이에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관련사례

Example

12-2

사적 복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P2P를 통해 다운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업로드를 의미하므로,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P2P를 통해 다운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참조조문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30

저작권법
제30조,
제123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 제31조 · 제75조 · 제76

조 · 제76조의2 · 제82조 ·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136조(권리의 침해조)

136

저작권법

제136조 -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확인하기 12 |

1.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형사상의 책임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의 문제를 읽고, ○×를 하시오.

2.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운로드만 받을 경우 사적복제의 이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3.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 책임만 진다. ()

정답 1.④ 2.× 3.×

상담 13

Question

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궁금하다기 보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쪽이 옳은 표현이겠네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진행하는 컴퓨터교실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인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법조항에 의하면 학교수업목적상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컴퓨터교실이 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복제해 주어도 됩니까?” 제 수업의 특성상 문서처리용이나 그래픽처리 프로그램 등 수업진행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나누어 줄 수 없다면, 학생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을 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긴 해도 제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작권법의 취지나 의의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알겠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너무 과도한 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수업목적상

복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정품을 이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하나인 컴퓨터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이셨지요? 과거에는 수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업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는 학교장의 감독하에 교사와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수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 컴퓨터교실의 수업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목적상 필요로 하는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수업목적상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괜찮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의 수업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수업의 범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25조 2항과 같이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조문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작권법 제101조의 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수업목적상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단, 이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화면 상태로 프린트해서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상담내용을 정리하면, 선생님의 수업은 저작권법의 범주 안에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업목적상 프로그램을 복제해서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관련사례

프리웨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네, 프리웨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프리웨어(Free ware)란 저작자에 의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무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 프리웨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뜻밖에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했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이 경우 무료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인 프리웨어 개발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알리고, 이용기간을 통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보완해서 차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완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프리웨어가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리웨어를 이용할 때 무료로 제공된 것이니까 팬찮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다운받지 마시고 첨부된 안내파일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내

세운 이용조건을 파악하고 그 조건 안에서 프리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서 프리웨어를 이용할 때는, 그 약관을 잘 살펴보고 개발자나 저작권자가 정해놓은 이용할 곳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례



학교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인데 집에 설치해도 되죠?

네, 그러나 구매한 프로그램의
약관과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을 집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가능⁵⁾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측도 대가를 받고 프로그램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

5) 저작권법 제101조3제1항4조

관련사례

Example

13-2

교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을 집에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약관과 계약의 내용입니다. 만일 학교가 사들인 프로그램이 학교용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집에서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따른 부정이용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외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이 또한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산 프로그램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구매한 프로그램의 약관과 계약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01

저작권법
제101조의
3 _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01조의

3 _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

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

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01조의

5 _

저작권법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101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에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사설 2009.4.22]



| 확인하기 13 |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를 하시오.

1. 프리웨어(Freeware)에는 저작권이 없다. ()

2.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 후, 원본 보존 목적으로 1부 정도 복제해 둘 수 있다. ()

정답 1. × 2. ○



학생과 교사 사이에 무슨 초상권이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하거나 학생들의 평소 모습을 렌즈에 담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고, 학부모님께는 학교생활을 안내할 수 있어 모두가 만족해합니다. 물론,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은 학생이나 학부모 뜻지않게 저에게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지요. 게다가 이제는 취미생활이 되어서 이 일에 흠뻑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학생들과 수업을 하던 중에 6학년 여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촬영을 거부하더군요. “선생님, 제 초상권을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요.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아이에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초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웃으면서 “선생님이랑 제자 사이에 무슨 초상권이니?”라며 둘러댔습니다. 이 학생의 말처럼 이 경우 초상권에 해당하나요?

제가 알기에는 초상권에 대한 명문화된 법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초상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가 잘 못된 겁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로서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학생에게 초상권은 존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실정법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4항에서 초상권에 대

한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위탁이나 촉탁에 의한 초상화나 초상 사진의 초상권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불완전하게 초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해석을 통해 초상권의 법적 근거를 도출하고, 민법 제751조 1항을 통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 또는 모습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공표 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또한 이러한 이용 행위를 금지할 권리⁶⁾”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生存權)를 가지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고요,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6) 채명기(2010)『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 2010 저작권 연수교재』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p. 206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이 허락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초상권 침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초상권 침해인가입니다. 먼저, 학교 행사 때 촬영한 초상 사진을, 관련 행사 안내를 위한 교육자료나 학교 또는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 또는 성적 결과가 저조한 학생의 모습을 촬영해서 올린다면 초상권과 명예훼손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사에 촬영된 아이들의 모습이 이 행사와 관련 없이 학교홍보물 등에 사용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행사에 참여한 이상, 이 행사를 보도하거나 소개하기 위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상담 의뢰한 “학생의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학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촬영한 학생 또는 학생의 사진은 소소한 일상이나 학생들의 평소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진을 선생님 홈페이지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진에 대해 학부모가 만족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학부모가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사례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이 뭡니까?



‘퍼블리시티권’ 이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입니다.

많은 분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초상권이 순수한 인격적 권리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로서 명기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판례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맨, 유명인 등의 초상을 활용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의 초상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 경우 허락을 받지 않으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서 화보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이 경우 이 화보를 출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연예인의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연예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직접 찍은 데다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은 초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⁷⁾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의 재산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증명사진 원판의 진짜 주인이 저 아닌가요?

증명사진 원판과 관련해서 소비자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⁷⁾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 3438 서적제작 판매 금지 가처분

관련사례

Example

14-2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소비자와 사진사 또는 사진관과의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 측면에서는 사진관에 가서 촬영을 의뢰한 사진이고, 사진촬영비용에는 사진원판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진관 측에서는 사진을 찍은 자, 즉 저작자는 사진사이므로 증명사진의 원판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요,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옛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과 기념사진의 원판은 인도요구를 받으면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진사 또는 사진관이 증명사진의 원판을 보관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사진원판의 주인은 소비자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10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헌법 [제17조]

17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751

민법

제751조

1항,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5

4항 _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① ~ ③ 생략

-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확인하기 14 |

1. 가족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에서 사진원판을 보관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가족사진의 원판은 누구의 것입니까?

2.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아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현재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와 학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 학생이 결석을 했습니다. 평소 몸이 약한 학생이라서 으레 감기려니 했지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동안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리 반에서 그 학생을 경찰서 근처에서 보았다든지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든지 하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에게 다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학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법무법인과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유인즉슨 자녀가 과거에 소설공유 카페에 올린 소설책이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때문에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아니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초범이나
경미한 침해를 한 청소년의 경우
고소장각하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으로서 구제 대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 수록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고, 고소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하거나 침해 정지 또는 침해예방을 요구받는 것이 민사조치입니다. 형사조치의 경우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러한 민사와 형사상의 조치는 별개의 것으로서 동시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고소가 있을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이 전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에서 합의를 요구받았을 때, 많은 학부모가 합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형사처벌 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이겠지요. 하지만,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까지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내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하신 중학생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초범이거나 대수롭지 않은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소장 각하처분(조사없이 사건종결)을 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소장 각하제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남의 재산이므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을 갖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관련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고소장 각하제도요? 생소한데요?



2008년 7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작권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때문에 청소년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합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하루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자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담당 지역의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⁸⁾. 이처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성인과 미성년자 사건까지 확대되었

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초범이거나 침해가 경미한 경우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2월, 2011년 2월 각 1년씩 연장하여 2012년 2월말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침해가 큰 경우라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작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겠죠?

관련사례



어디에서 저작권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죠?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작권관련 문제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분쟁이

8)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2009),

출처 : http://www.copyright.or.kr/prroom/news_view.do?bd_seq=4797

관련사례

Example

15-2

생긴 경우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02-2660-005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http://adr.copyright.or.kr/main/index.do>

참조조문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25

저작권법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 _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④ 생략

125

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제136조(권리의 침해조)

136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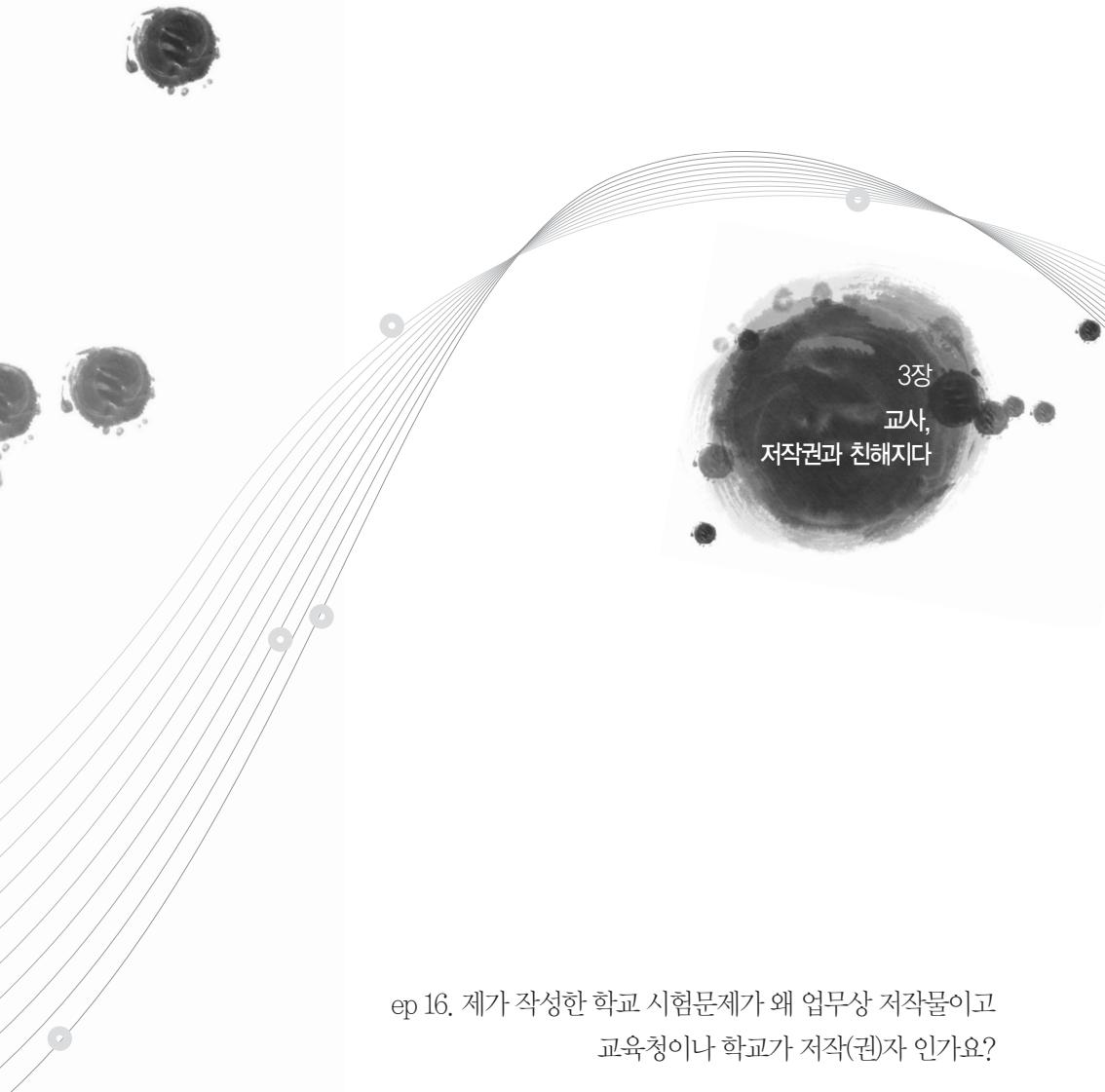
| 확인하기 15 |

※다음의 읽고, ○×를 하시오.

1. 초등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다. ()
2. 청소년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중하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1. ○ 2. ×

교사 저작권 친해지다
친해지다



ep 16. 제가 작성한 학교 시험문제가 왜 업무상 저작물이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 인가요?

ep 17. 원치 않는 공개수업, 녹화에서까지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ep 18. 끝끝내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ep 19. 저작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ep 20. 공문에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작성한
학교 **시험문제가**
왜 업무상 저작물이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 인가요?



현재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수학문제집 출판을 제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했던 학교 시험문제를 모아서 원고를 집필했습니다. 집필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더

니, 출판사에서는 “선생님께서 원고에 있는 문제를 직접 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문제는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저작권이 없으세요. 학교가 권한을 갖거든요.”

이 원고로는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제를 새로 만드시거나 숫자나 내용을 일부라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편집이 없이는 이대로는 도저히 출판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막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출판사와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위해 만들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출제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문제인데, 왜 시험문제라는 이유로 업무상 저작물이고, 학교가 저작권을 갖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창작자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로 공표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이 없다면
단체 등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창작자가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뜻합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저작물이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해야 하며,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창작자로 한다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이 없다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이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은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셨고요, 시험문제출제 업무는 교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제출한 시험문제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명의로 시험문제를 공표하거나 공표할 것으로 예정되고, 시험문제의 저작자를 선생님으로 한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없다면 출판사가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출한 시험문제의 저작(권)자는 교육청 또는 학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문제집을 출판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출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례

그럼 수업지도안은요?



교사 수업지도안의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가 되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하고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고 (5) 계약 및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교사를 저작(권)자로 표기하여 업무상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교사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교사가 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지도안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다섯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업지도안 전부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

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교사 개인의 저작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도 개별적인 사안마다 위의 요건을 갖추면 업무성을 인정하여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사례



교사연구회에서 만든 교육자료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은 아니겠죠?

교육청이나 학교의 기획·지시 하에 제작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면

교육청 또는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관련사례

Example

16-2

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교사연구회 교육자료가 교육청이나 학교의 기획 하에 제작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라면 교육청이나 학교가 저작(권)자인 업무상 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업무상 저작물도 아니고 교사연구회 또는 교사들의 개인 저작물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제2조(정의)

2

저작권법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2조,

제9조 _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9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

1. 일반적으로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지만, 법인 등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어문저작물
 ② 법인저작물
 ③ 공동저작물
 ④ 업무상저작물

※ 다음의 읽고, ○×를 하시오.

2.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인과 단체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

3. 창작자의 이름으로 공표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라면 법인
이나 단체 등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



공개수업,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업공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교사의 수업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료교사나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공교육과 교사의 질은 수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수업 공개는 물론이고, 수업을 녹화해서 학교홈페이지에 공개도 하라니요? 수업 동영상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나 동료교사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걱정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만약 학교홈페이지에 수업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동영상에는 우선 수업에 참여하는 저와 학생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자료가 공개되니까 저작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수업시간에 수업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저도 수업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누군가의 저작물이 동영상에 실려 인터넷에까지 공개된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은 제가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촬영을 원치 않았는데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수업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이용허락을 얻지못한

공표된 저작물의 촬영을 피하고
편집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안은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관련 사례와 판례가 없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수업 동영상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은 물론 학생의 초상권 및 명예 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우려처럼 수업녹화 시에 먼저 학생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촬영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수업녹화를 한다는 것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수업 동영상 녹화시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게서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조금 번거롭겠지요?

두 번째로 수업 동영상에는 학생들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장면을 피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될 때 동영상의 파급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어떤 학생의 문제 행동이나 명예가 손상될만한 장면을 녹화했다고 합시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해당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겠지요. 따라서 녹화한 화면을 꼼꼼히 관찰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편집도 하셔야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 수업 중에는 여러 저작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수업 동영상 촬영을 생각하신다면 이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동영상 공개는 수업목적상 또는 이러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공표된 저작물을 동영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수업녹화 시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자료나 교사활동과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녹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예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동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글자체나 클립아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분이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무척 주의하고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위의 세 경우보다 조금 예민해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우니까요.

관련사례

글자체도 정말 저작물 맞아요?



아니오, 서체도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닙니다.

앞의 상담사례 17에서 불법적인 글자체를 사용하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불법적인 글자체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창작을 했다고 해서 그 창작물이 불법적인 창작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그 결과로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글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⁹⁾라고 밝혔습니다.

⁹⁾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저작권 등록 반려처분 취소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글자체를 사용해서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글자체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라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에서 함부로 글자체(폰트 프로그램)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제2조(정의)

2

저작권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보호법

제2조 _

제2조(정의)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확인하기 17 |

※ 다음을 읽고, ○×를 하시오.

1. 저작권법에서 글자체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

2. 수업녹화시 학생들의 초상권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수업녹화시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1. ○ 2. × 3. ○



끌끌내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 학교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 현재 홍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홍보 책자에는 다양한 글과 사진 등이 들어갑니다. 홍보업무 담당자이다 보니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는 편이고 저작권에는 나름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글과 사진의 대부분, 저작권자를 찾아서 이용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진의 저작권자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하필이면 그 사진들이 학교홍보 책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빼버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한 번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태라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저작물을 그냥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사진은 마땅히 우리 사회 공통의 것이지 않나요? 달리 방법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터여서 해당 글과 사진을 그냥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혹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오,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법정허락제도를
활용**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군요. 사실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저작권 문제가 결부되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선생님! 노력 끝에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자료를
그냥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저작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
권 침해입니다. 선생님은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사진저작물을 이용
하기 위해서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혹시 법정허락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법정허락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상당한 노력이라는 것은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하는 저작물과 같은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사는 곳)을 조회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를 보냈지만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을 받지 못했을 경우, 더불어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명칭, 주소, 사는 곳을 조회하는 공고를 낸 후 10일이 지났을 경우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내국인의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신청한 후 지정 은행에서 공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법정허락을 승인받았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고요, 법정허락을 받아서 이용한다는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많은 이유는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가 저작권의 재산적 이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가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이용을 원하는 사진 저작물이 외국인의 것이 아니라면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

저작권자를 못 찾은 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
나중에라도 지급하면 되죠?



아니오,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만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장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정작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이 이용되는 곳에 ‘차후 저작권자가 나타날 경우,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일단 이용하고 저작권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뜻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합법적이고 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합당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사용료도 내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주장하기 전까지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알고도 일부러 저작물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다른 저작물로 대체하거나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조조문

제50조(저작자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0

저작권법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자산권자나 그의 가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 _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자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18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자산권자의 성명 또

참조조문 18 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저작권법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시행령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제18조

비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확인하기 18 |

저작인가기

1.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상당한 노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 ② 관련 블로그에 찾는 글 올리기
- ③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고하기
-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의하기

※ 다음을 읽고, ○×를 하시오.

2. 외국인의 저작물도 법정허락의 대상이 된다. ()

3. 법정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정답 1. ② 2. × 3. ×



저작권침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 저작물이 침해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흥분해서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지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주로 고학년인 5, 6학년 학생을 담당하고 있지요. 고학년 아이들의 담임을 하면

서 깨닫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경험과 지도방법 그리고 느낀 점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그날로 제 블로그에 연재를 시작했지요. 연재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릴까요? 제 경우엔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글을 써 왔고요. 그러던 차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서점에 나가서 관련 서적을 이것저것 뒤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그중 한 책에서 제 블로그에 실은 글과 똑같은 글을 발견하게 되었지 뭡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쓴 글 그대로를 옮겨 적었더군요. 발췌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책에 글이 실렸다니까 남이 보기에는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돼 보십시오. 자신의 글이 본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에 분통 터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니 분통이 터지다 못 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처지를 바꿔서 정작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참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길 고대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침해사실을 침해자에게 통보한 후

상호합의를 하거나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겪었을 마음고생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책이 인용의 형식을 갖추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생님의 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사실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침해자에게 통보한 후 상호합의를 하거나, 침해의 정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 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작권법 제125조와 민법 76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선생님께서 침해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선생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징역과 벌금은 병과(並科), 즉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제136조를 참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값싸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오,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불법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저작권침해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데다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복제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24조 따르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고도, 불법적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도 이것을 학교 내부에서 판매 또는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124

저작권법

제124조,

제125조_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생략

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25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배타적발행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제136조(권리의 침해조)

136

저작권법

제136조 _

- ① 저작자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3. 생략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6

민법

제766조 _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하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확인하기 19 |

저작권

1. 다음 중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 ③



공문에 불법 저작물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인 한 중학교에서 연구부장을 맡은 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모아서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긴장되고 힘들기도 했지만, 1년간의 연구와 열정이 결실을 보는 날이기에 온 정성을 쏟아 무사히 발표회를 마쳤고 그 어느 때보다 보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당했다며 어떤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제가 공문으로 보낸 안내장에 불법저작물이 있었던 겁니다. 초청장이 좀 더 품위 있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이용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학교의 연구발표회를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그 초청장을 띄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저작물을 이용한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 연구발표회를 준비한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저 혼자 벌금을 받고 처벌받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저 때문에 학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니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그 소식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작권법은
근로자와 법인 **모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 제외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 어쩌지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마음
이 아주 어려우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저희 마음도 무겁습니다.

초청장에 포함된 불법저작물을 이유로 선생님께서는 법적 책임을 지
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근로자에게만 요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저작권 침해죄를 묻는 동시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나 법인 등
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결국, 학교운영자도 공문에 있는 불법 저작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역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자가 꼭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학교운영자가 근로자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처벌하는 것은 ‘책임 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실 사항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준수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¹⁰⁾되어 있으며, 필요시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 관련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둘째,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며

셋째, 지속적인 저작권 관련 교직원연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10)임원선(2009), 개정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p. 402

관련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컴퓨터의 레지스트리 내 불법소프트웨어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조치를 한 것 아닌가요?” 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삭제해도 컴퓨터의 레지스트리에 그 이용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지스트리에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흔적이 남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해도 과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리에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서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기 초에 교실 컴퓨터를 포맷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평소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불법 저작물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COPY112(<http://www.copy112.or.kr>)에 신고하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는 수많은 불법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저작물은 아래의 COPY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copy112.or.kr>

참조문

제141조(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 _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확인하기 20 |

2011학년도

1. 회사의 직원이 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그를 고용한 법인과 개인에게
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다음 중 불법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 ① <http://www.copy112.com>
- ② <http://www.copy112.or.kr>
- ③ <http://www.copy112.go.kr>
- ④ <http://www.copy112.co.kr>

정답 1. 양벌규정 2. ②



영화관에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업시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화의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한 번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에 다음주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신영화가 DVD로 출시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좋은 학습효과를 놓칠 것 같아서 화질이 떨어지지만 이대로 수업시간에 이용할까 합니다... 혹시 이런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수업시간에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업목적이니 괜찮겠죠.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녹화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최근 바뀐 저작권법에는 상영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촬영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때부터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관 갈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캠코더의 휴대 조차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소지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상영중인 영화관에서 영화를 촬영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영화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관에서는 학교일은 잊고 마음 편하게 영화를 관람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수업자료는 관련 유사내용이 담긴 DVD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04조의6, 제137조

104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

제104조

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

6_

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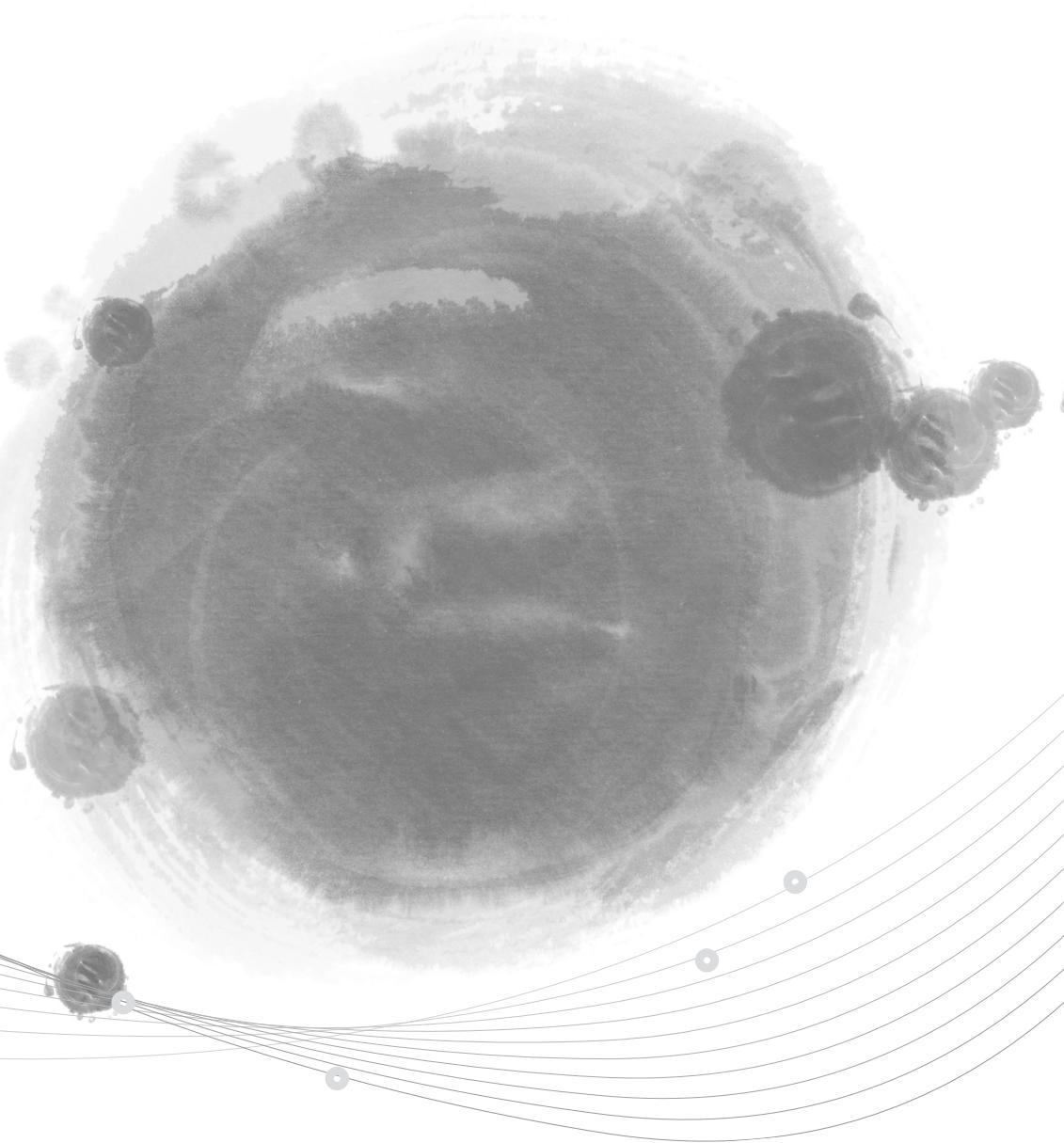
1. ~ 3의2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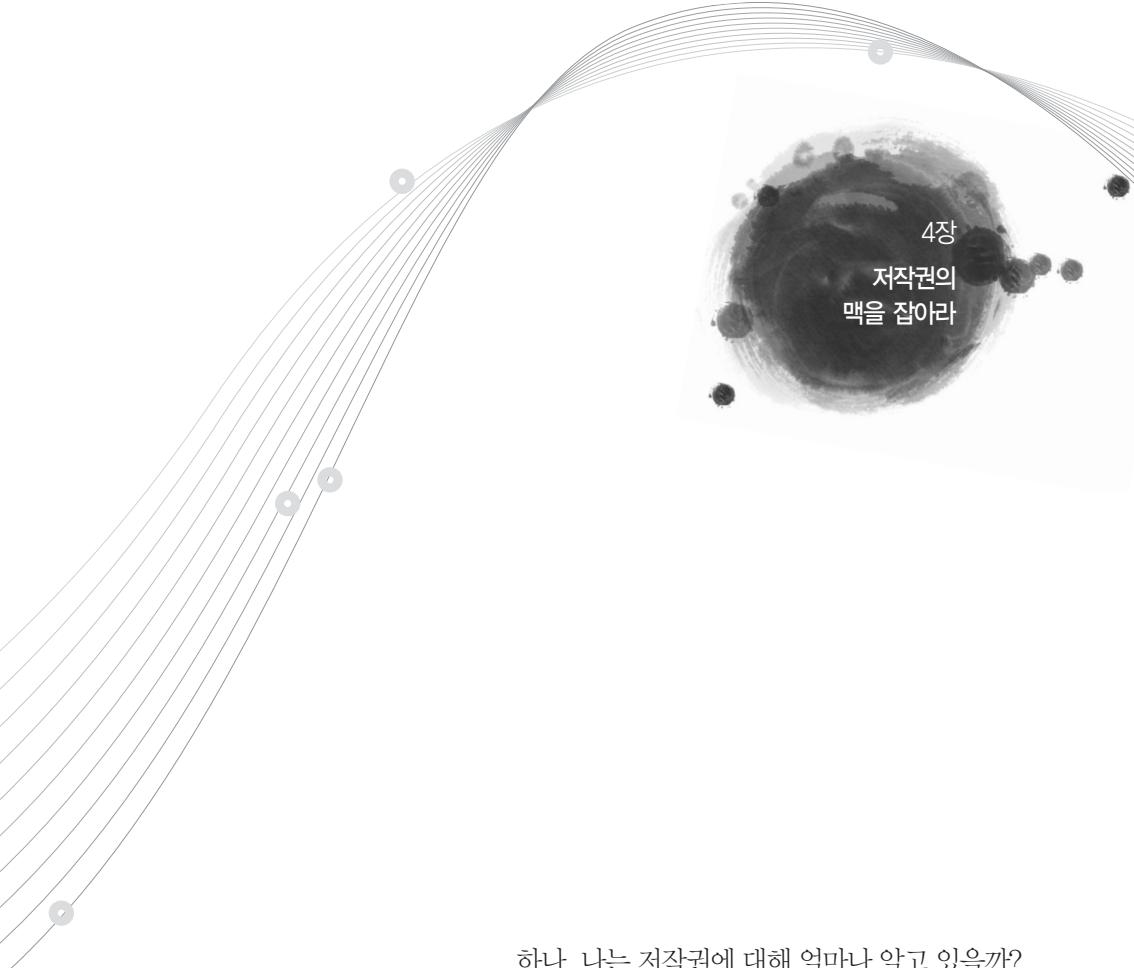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 7. (생략)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저작권의
맥을 잡아라





4장
저작권의
맥을 잡아라

하나. 나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두울. 헷갈리는 저작권교육, 왜 필요할까?

세엣. 저작권을 교육하는 당신의 진짜 목적은?

네엣.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교육의 알짜배기 콘텐츠



하나, 나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래 우리는 저작권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교육을 받는다는 청소년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작권 침해가 나와 먼 거리 이야기가 아닌, 나를 포함하여 우리 반 학생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떠들썩한 저작권에 대하여 얼마나 올바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지식수준과 저작권의식수준을 조사¹¹⁾했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지식수준은 74.9점, 저작권의식수준은 67.4점으로 전반적인 저작권지수는 100점 만점에 71.1점이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저작권지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내용	저작권 인식 및 의식 지수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등을 퍼와 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87.9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돈을 내고 내려 받았더라도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6.4

11)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12월 21일 보도자료

내용	저작권 인식 및 의식 지수
내가 가진 영화나 게임 등을 복제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79.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과제물로 제출하는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84.5
다른 사이트의 저작물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56.6
창작자의 권리는 존중해야 한다.	78.4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67.3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67.9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66.2
나의 저작권 보호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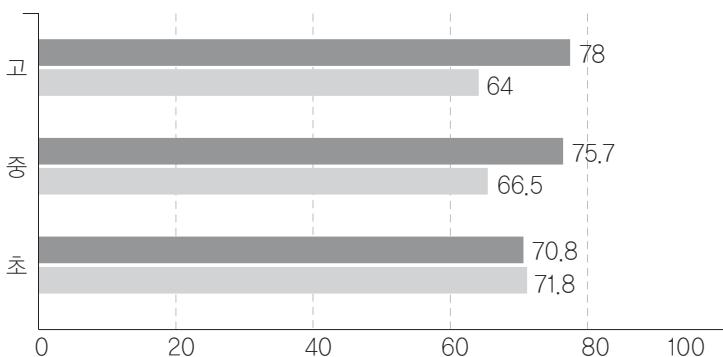
항목별 저작권지수 표에서 처음에 나오는 “만든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등을 퍼와 내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저작권인식 항목은 87.9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에 있

는 저작물을 내 블로그나 카페에 직접 링크시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항목은 56.6점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저작권지식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의식’의 경우 저작권 ‘인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의 저작권 보호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57.1점에 그쳐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내적 기준보다 낮음을 시사합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저작권인식수준(74.9점)과 저작권의식수준(67.4점)의 괴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저작권 관련 지식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 행태로 이어지지 못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 학년이 올라갈수록 큽니다.

| 초 · 중 · 고등학생 저작권 인식 및 의식지수 |



저작권인식부족과 저작권의식부족으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어린 학생들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의식 부족으로 어린 학생들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내려받기

또는 올리기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저작권인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저작권 이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준법의식에 좀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왜 필요할까?



사실 지금까지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사례 증가와 한류, 한미 FTA 등을 통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사

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식 부족 때문에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작권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교육의 필요성¹²⁾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교육을 통해 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악, 영상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수많은 저작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물은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을 통해 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저작권 교육을 통해 바른 도덕적 관념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도덕적 관념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이며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합니다. 저작권과 저작물을 지켜주는 행동은 곧 남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해 줍니다.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수많은

12) 본 내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출판한, 채명기 외(2008)『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를 참조하였다.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너나없이 불법적인 공유를 하는 탓에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좌절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가 영화제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세계인의 베스트셀러가 된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의 브랜드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으며, 3D입체 영상물로 이슈가 됐던 영화 ‘아바타’의 경제적 이익은 약 3조 원을 넘어섰다니 놀랍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핵심역량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며 점점 활성화되고 디지털 매체가 급변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저작권 교육은 우리 문화 발달에 중요한 소임을 수행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저작권 산업의 가치는 2008년 기준으로 실질 GDP의 9.5%를 차지할 정도이므로 저작권 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만일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물을 보호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저작권 교육은 미래의 창작자인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힘을 길러 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처음 베이식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당시 그 프로그램은 750달러라는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이용했다면 지금의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행사활동 등은 각종 저작물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저작물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활동을 주도해야 할 교사가 저작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아마 “선생님도 지키지 않는 저작권을 왜 우리만 지켜야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자신에게도 요구되는 상식 아닌 상식이 되었습니다.



세엣,

저작권을 교육하는 당신의 진짜 목적은?

저작권 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건전한 저작권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 동시에 ‘현재와 동시에 잠재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저작자’인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의 저작권 교육 목적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저작권교육 소위원회(2003)¹³⁾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저작권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저작권에 대해 각자 필요한 지식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며, 지적창조활동의 소산인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기존의 저작물 이용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2006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에서는 저작권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가. 저작권법 목적에 대한 이해

나.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다.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라. 타인의 저작물을 소중히 하는 태도

앞의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

둘째, 저작권법의 필요성과 목적의 이해

셋째,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넷째, 미래 저작자로서의 자질 함양

13) http://www.mext.go.jp/b_menu/shingi/bunka/toushin/030102e.htm

네엣,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교육의 알짜배기 콘텐츠

‘저작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작권에 생소하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 드리고자 아래에 저작권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중·고 각 학교급별 교육할 내용을 표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이니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역	세부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1) 저작권 보호에 대한 흥미와 관심 (1) 저작물의 가치와 중요성 (2)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3) 저작권의 필요성/저작권 보호의 의미(중요성) 알기 (4)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 갖기 2) 저작권 보호에 대한 태도(마음가짐) (1) 저작자의 권리 인정/타인의 권리 보호 및 존중 (2) 저작물/저작권 보호(존중) 태도	■ ■	■	■

영역	세부 내용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저작권에 대한 이해	1) 저작권의 개념 이해 (1) 저작물의 개념 (2) 저작권의 뜻과 목적 (3)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개념 (4) 저작권자의 권리		■ ■	■
저작권의 범위	2) 저작권의 내용 이해 (1) 저작인격권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등 (2) 저작재산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 작성권 (3) 저작인접권 ① 실연자의 권리 ② 음반제작자의 권리 ③ 방송사업자의 권리	■	■	■ ■
	3) 저작권의 범위 ①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저작물 ④ 미술저작물 ⑤ 사진저작물 ⑥ 영상저작물 ⑦ 도형저작물 ⑧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⑨ 2차적 저작물 ⑩ 편집저작물	■	■	■ ■

영역	세부 내용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저작권에 대한 이해	<p>4) 저작권의 보호기간</p> <p>① 저작권 보호 기간의 원칙 및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등의 보호 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 <p>②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p> <p>5) 저작권에 관한 법과 제도</p> <p>(1) 저작권의 형성과 발달</p> <p>(2) 저작권 관련 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집중 단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p>(3) 저작권 보호 관련 활동</p>	■	■■	■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p>1) 저작권의 이용 방법 알기</p> <p>(1) 저작재산권의 양도</p> <p>(2) 저작물의 이용 허락</p> <p>(3)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저작 물의 이용</p> <p>(4) 저작권의 제한적 이용 (학교교육 목적, 사적 이용을 위한 복 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 서의 복제 등)</p> <p>(5) 법정 허락에 의한 저작물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및 판매용의 제작 	■	■■	■■

영역	세부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2) 저작물 및 저작권의 이용 실제 ①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저작물 ④ 미술저작물 ⑤ 사진저작물 ⑥ 영상저작물 ⑦ 도형저작물 ⑧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⑨ 2차적 저작물 ⑩ 편집저작물		■ ■	■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1) 저작권 문제의 이해 (1) 불법저작물의 유형 (2) 불법저작물의 문제점 (3) 저작권 침해의 의미/사례 분석 2)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제도 이해 (1) 분쟁조정제도 (2) 민사적 구제 (3) 형사적 구제 3) 저작권 문제의 해결 (1) 나의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문제 해결 (2) 남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문제 해결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동 및 실천 (1) 나의 저작권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실천 (2) 타인의 저작권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실천 -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 실천 - 오프라인에서 저작권 보호 실천	■ ■ ■	■ ■ ■	■ ■ ■

참고문헌

구정화 외(2008) 『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중·고등학교 지도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구정화 외(2008) 『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초등학교 지도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재승 외(2010) 『저작권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분석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연구(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2009) 『개정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채명기 외(2010) 『학교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2010 저작권 연수교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100-4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299 KERIS 빌딩
TEL : 02-2118-1114, 1100 www.keris.or.kr

9 788959 843343
ISBN 978-89-5984-334-3